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발급일		처리기간		즉시	
신청인	성명(한글)						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)
	국적								
	운전면허증 발급		실물	[]국문 []영문		수량방법	[]방문 []등기우편 ※ 등기우편 발송시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.		
			모바일 (희망하는 경우에만 선택)	[]IC카드 발급 []현장 QR 발급					
	성명 (영문)	성							
		이름							
※ 성명(영문)란은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※ 기재할 수 있는 글자의 수는 제한됩니다(최대 한글 20자・로마자 40자, 띄어쓰기 포함).									
주민등록번호						운전면허번호			
주소									
전화번호						전자우편			

210mm×297mm(백상지 80g/m² 또는 중질지 80g/m²)

병력(病歷)신고서(응시자가 작성)

- 정신질환, 경련성 질환, 마약류, 알코올중독 등 -

(1) 귀하는 조현병·정동장애(情動障礙)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있음	없음
(있는 경우) 병명:	치료개시일:	
치료종료일:	치료 병원:	
(2) 귀하는 경련성 질환(뇌전증)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?	있음	없음
(있는 경우) 병명:	치료개시일:	
치료종료일:	치료 병원:	
(3) 귀하는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·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?	있음	없음
(치료사실이 있는 경우) 병명:	치료개시일:	
치료종료일:	치료 병원:	
(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) 단속 일시:	위반 행위:	
단속 기관:		
년 월 일		

응시자 (서명 또는 인)

※ 만일 허위사실을 적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52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,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.

판정관 의견	적정 []	정밀검사 필요 []	판정관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신 체 검 사 서

(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,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)

시 력			청 력 (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)		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					
					상지		하지		문진결과	
양안	좌	우	좌	우	적	부	적	부	적	부
그 밖의 의사 소견					검사결과 적격 여부					
년 월 일										
병 원 장 (인)										
의사면허번호					담당의사			(서명 또는 인)		
..... 담당의사 (인) 자르는 선										

운전면허 신체검사서(병원 보관용)

성명					주민등록번호					
주소					연락처					
시 력			청 력 (제1종 소형은 해당 사항 없음)		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					
					상지		하지		문진결과	
양안	좌	우	좌	우	적	부	적	부	적	부
그 밖의 의사 소견					검사결과 적격 여부					
년 월 일										
병 원 장 (인)										
의사면허번호					담당의사			(서명 또는 인)		

신청인 제출서류 및 업무담당자 확인사항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분증명서(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) 2.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(3.5cm×4.5cm) 2장 3. 병력신고서(정기적성검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4. 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(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가. 신체검사서 나.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다.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라. 병역판정 신체검사(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합니다) 결과 통보서 5.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(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
업무담당자 확인사항	1. 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내역 또는 「병역법」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내역 중 적성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력 또는 청력(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종 소형의 경우 청력에 관한 정보는 제외합니다)에 관한 정보 2.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3. 여권정보(영문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

※ 비고

1.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82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적성검사(갱신)기간 등의 운전면허 정보를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를 원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